

임실군의회 제333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의·의결된 「임실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 12. 27.

임실군의회 의장



임실군의회 조례 제6호

임실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공직자행동”을 “공직자의 행동”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를 “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비상근무를 무단히”를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복직기관”을 “본직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지휘 · 감독”을 “지휘 · 감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자가”를 “사람이”로, “복직기관”을 “본직기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가”를 “사람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국가”를 “국외”로, “유관기관”을 “연구기관”으로, “조례에”를 “조례에서”로, “(대통령령)”을 적용한다”

를 “을 준용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소속공무원”을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제10조의2 중 “해임·파면된 공무원에 대하여”를 “의장은”으로, “잔무처리상”을 “남은 업무 처리를 위하여”로, “의장은”을 “해임·파면된 공무원을”로 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을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으로, “휴직기간·정직기간·직위해제기간”을 “휴직기간, 정직기간, 직위해제기간”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를 “법 제63조제2항제4호”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제1호다목”을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제1호다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공무상”을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결근·정직·강등·직위해제”를 “결근·정직·강등·직위해제된”으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2제3항제1호”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2제3항제1호”로, “자에”를 “공무원에”로 한다.

제13조의2의 제목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으로, “2년 미만의”를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으로 한다.

제14조제4항 중 “소속공무원”을 “소속 공무원”으로, “공무수행상”을 “공무수행에”로,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지급하고 연가에”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가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제17조”를 “제13조”로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시간외근무시간 저축연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5조제1항 본문 중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10”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10”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제2호”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개월수”를 “개월 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지방공무원법 제63조”를 “법 제63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제1항제2호”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폐직·과원”을 “폐직·과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10”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10”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소속공무원”을 “소속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15조제4항”을 “제15조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소속공무원”을 “소속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병가일이 7일이상일”을 “병가 일수가 7일 이

상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진단 서 제출없”을 “진단서 제출 없”으로 한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속공무원”을 “소속 공무원”으로, “기간 공가를”을 “기간 또는 시간을 공가로”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로,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을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31조제1항제5호”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 제9조”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로 하며, 같은 조 제11호 중 “「검역법」 제5조제1항”을 “「검역법」 제5조제1항”으로, “오염인근지역”을 “검역관리지역 및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본문 중 “되게”를 “되도록”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만 40세”를 “40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유산·사산”을 “유산·사산 또는 조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만5세”를 “5세”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설치령에 의한”을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제14조”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시술 당일 에 1일의 휴가”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6

항에 따라 난임치료시술휴가”로 하고,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여성 공무원의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의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11호의1호 “재직기간 산정은 제13조제2항에 따른다”도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 “10일(2회 분할 사용 가능)”을 “10일”로 하고 제1호로 , 같은 항 제3호 “15일(2회 분할 사용가능)”을 “20일”로 하고 제2호로, 같은 항 제4호 “20일(4회 분할 사용가능)”을 “20일”로 하고 제3호로,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재직 40년 이상 : 10일”로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 “재직기간별 잔여휴가일수는 소급 및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를 “재직기간별 미사용 휴가일수는 이월하여, 다음 해당 재직기간의 장기재직 휴가일수에 포함하여 사용 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14항제1호 중 “휴업·휴원·휴교”를 “휴업, 휴원, 휴교”로 하고, 같은 조 제16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주요업무(재해, 재난, 대단위 행사, 선거사무종사, 주요현안 업무 등)를 수행한 경우

3. 근로자의날(5월 1일)이 있는 해당 월에 공무원에게 1일의 기념일 휴가를 줄 수 있다.

제19조 중 “조례가”를 “조례에서”로 한다.

제20조를 제21조로 하고,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
(제13조의2 관련)

1.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2(일반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자(즉, 호봉 획정시 인정된 유사경력)

2.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가산안함
-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 3일 가산

[별표4]

경조사 휴가일수표(제18조 제1항과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결혼	본인	5일
	자녀	1일
출산	배우자	1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
입양	본인	20일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5일
	<u>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u>	<u>1일</u>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일
탈상	<u>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u>	<u>1일</u>

비고 :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